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608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54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06.1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2	1021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06.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3	10177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04.2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2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2. 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2. 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

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登記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

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登記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 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 호의 해상민사사건, 같은 항 제 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 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 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 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 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으로 한다. <u><신설></u>	제173조(관할법원) ① ----- ----- ----- ----- <u>해사국제상사법원</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해사 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u>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생략)

<신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가압류법원) ① -----

-----.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

<신 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략)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생략)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
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
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
사법원-----

③ (현행과 같음)

제303조(관할법원) ① -----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 . <u>다만,</u> <u>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u> <u>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u> <u>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u> <u>이 관할한다.</u>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u>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u> <u>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u> <u>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u> <u>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u> <u>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u> <u>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u> <u>관할권이 있다.</u>
---	---